의 안 변	<u></u> 호	제	ই
의	결	2023.	
연 월	일	(제	회)

의 결사항

새 마 을 금 고 법 시 행 령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 11. 공포, 2023. 10. 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 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한 내용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43조, 부칙 제3조)
 - 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와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보험금을 분리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함(안 제4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신설)

바.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안 제50조 제5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우선출자) 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6, 제41조의7, 제41조의8 및 제41조의9 중 "중앙회"는 "금고"로하고, 제41조의2 중 "법 제70조의2"는 "법 제9조의4"로 하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제41조의6 중 "회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②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 1. 금고의 다른 금고에 대한 우선출자
- 2.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우선출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상근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상근이사장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금융·금고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근이사

-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 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근감사

- 가. 금고에서 감사·회계·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해당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금고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나. 중앙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 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감사·회계·금융·재무 또는 금고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의4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9명 이상 13명 이하"를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를 "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 4명 이내(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를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 4명 이내"를 "중에서 중앙회장이 위촉하는 자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2항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3호·제4호"를 하다.

3. 금고 이사장이 아닌 중앙회 이사 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자 1

명

제46조제3항 전단 중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대위 변제의 한도를 적용한다.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공 제금
- 2. 중앙회 공제금 중 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금
- 3.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 제4장에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4(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정보분석원장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장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제5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 나.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제51조의2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51조의2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법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 시행일 현재 재임하고 있는 상근이사장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 년 3월 12일까 지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4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 다.
- 제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재임하고 있는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8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우선출자) ① 법 제9조
	의4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하여
	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
	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
	의2, 제41조의3, 제41조의6, 제4
	<u>1조의7, 제41조의8 및 제41조의</u>
	9 중 "중앙회"는 "금고"로 하고,
	제41조의2 중 "법 제70조의2"는
	<u>"법 제9조의4"로 하며, 제41조</u>
	의3, 제41조의4 및 제41조의6
	중 "회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②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1. 금고의 다른 금고에 대한 우
	<u>선출자</u>
	2.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우선
	<u>출자</u>
제4조의2 (생 략)	<u>제4조의3</u>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8조(상근이사의 자격 요건) 법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①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상
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란	근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하는 자를 말한다.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	하여야 한다.

- 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1. 상근이사장 는 자
- 2. 금융 관련 국가기관 · 연구기 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워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 -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 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금융·금고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에 따 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 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상근이사
 -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 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 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 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u>3. 상근</u>감사

가. 금고에서 감사·회계·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 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해 당 금고에서 최근 2년 이 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금고 감사로 근무 중이 거나 근무한 자는 제외한 다)는 제외한다.

나. 중앙회,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금융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감사·회계·
금융·재무 또는 금고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2조(금고의 사업) ① ~ ③ (생략)

<신 설>

제16조의4(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금고는 법 제31조에 따라 소유 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 다.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 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 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 다.

제12조(금고의 사업)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u><삭 제></u>

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임대할 수 있다.

제39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법 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라 중앙회가 소 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는 제16조의4를 준용한다.

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 전 원회의 구성) ① 법 제71조제3 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 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9명</u> 이상 13명 이하</u>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 ② 위원장은 중앙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u>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u>1명</u>
- 2.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

<u><삭 제></u>

세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
원회의 구성) ①	
	<u>9명</u> -
②	
<u>자가</u>	
1	
<u>2명</u>	
2	

로서 금융・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2명은 행정안 전부장관이 지명한다)

3. 다음 각 목의 중앙회 이사 3. 가. 금고 이사장인 이사 1명 나. 금고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

다. 지도이사 1명

- 4. 금고의 이사장 중 4명 이내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 제> 의 위원(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은 회장 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 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다.
- 략)
 - ② 삭 제
 -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u>하는 자 3명</u>
3.	금고 이사장이 아닌 중앙회
	이사 중에서 중앙회장이 지명
	하는자 1명

4. ----- 중에서 중앙회 장이 위촉하는 자 2명

④ <u>제2항의 규정</u>
<u>제</u> 2
<u>항제4호</u>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생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현행 과 같음)

(3) ----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 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 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u>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 는 5천만원으로 한다</u>. 이 경우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④·⑤ (생 략)

<u>한다</u>.

④ 제3항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대위변제의 한도를 적용한다.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 금저축공제금
- 2. 중앙회 공제금 중 공제계약 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 기로 약정한 공제금
- 3.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기 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 예탁금
-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신 설>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 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신 설> 같음)

제47조의4(지원요청) 법 제74조제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장을 말한다.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장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장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

 준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7 정보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 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 7. (생략)

나.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
도기준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
 성 자산의 보유기준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u>4</u> 의2.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우
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
한 사무

5. ~ 7. (현행과 같음)

-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수 있다.
- 1. (생략)

<신 설>

2. ~ 5. (생략)

⑤ (생략)

4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9조의4에 따른 우선
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u>사무</u>
2.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 205 - 3946$